2025악년도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 일 시 : 2025. 3. 19.(수) 14:00

장 소 : 완주중학교 강당 및 각 교실



미래를 여는 꿈과 행복이 깃든 즐거운 학교

완주중학교

사 례

1. 학교 현황	·· 1
2. 학급 현황	2
3. 2025학년도 일과 운영	2
4. 2025학년도 학사 운영 계획	3
5. 2025학년도 교육과정 편성표	5
6. 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9
7. 2025학년도 자유학기제 운영 계획	11
8. 3학년부 고입·진로진학 운영 계획 ······	12
9. 2025학년도 봉사활동 운영 계획	16
10. 학생 출결 상황 관리	21
I1. 학생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안내 ······	23
12. 2025학년도 학교 회계 예산	26
13. 학부모연수 자료	
가. [학교폭력 예방교육]	27
나. [성폭력 예방 교육, 양성평등 교육]	28
다. [감염병 예방교육]	31
라.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교육] ···································	32
마. [흡연·음주·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	34
바. [마약 예방 교육]	35
사. [장애인권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36
아. [공교육 정상화 촉 진 및 선행학습 예방] ···································	40
자. [학부모 청렴교육]	41
14. 2025학년도 교실배치도	43

1 약교 연왕



가. 위치 및 전화

주소	(55328)	전북특별자치!	도 완주군 봉	동읍 봉동동서	로 60-6			
전화	교장실	행정실	본교무실	진학실	3학년교무실	Wee클래스	체육실	급식실
인확	262-2157	261-3033	261-5531	262-0300	262-2006	261-4217	261-4218	261-3075
FAX	•	261-2160						
H.p	www.jb-v	vanju.ms.kr						

나. 학교 연혁

년 월 일	ዝ 요
1948. 06. 05	완주중학교 개교
1955. 05. 16	고등학교 병설
1962. 02. 29	고등학교 폐교
1967. 04. 10	농고 병설
1973. 02. 28	농고 폐교
2023. 03. 01	제25대 송기용 교장 부임
2025. 01. 08	제76회 졸업식(126명), 총 16,403명
2025. 03. 04	제79회 신입생 입학(6학급), 총20학급(특수학급 2학급 포함)

다. 학급 편성 및 학생

2025.03.01.기준 ()는 특수학급

구 분	학 년	1	2	3	4
;	편성 학급	6	6(2)	6	18(2)
학	남	88	84	83(5)	255(5)
생	여	51(1)	56	64(2)	171(3)
수	74	139	140	147	426(8)

라. 교직원

	구 분		ī	2	원			일	반	직		JIEŁ	으돟	
내 용		교장	교감	보직 교사	(기단제(기사)	계	실장	주무관	교육 공무직	조 리 종사원	계	계약직	운동 지도자	총계
현	남	1		3	5	9	1		2		3	1		12
	여		1	8	21	30		3	4	5	12			42
원	계	1	1	11	26	39	1	3	6	5	15			54

마. 교과별 교사

과목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기가	영어	정보	한문	줅쒸	특수	전문 상담	사서	영양	보건	계
인원	4	2	3	4	3	3	1	2	3	3	1	1	1	2	1	1	1	1	37

2 악급 연왕



2025.3.1. 기준

학년	반	남	여	계	전화번호
	1	14	10	24	063-262-0047
	2	16	7	23	070-4060-7016
1 1	3	14	9	23	070-4060-7029
'	4	15	8	23	070-4060-7015
	5	15	8	23	070-4060-7013
	6	14	9	23	070-4060-7014
소		88	51	39	
학년	반	남	역	刵	
	1	14	9	23	063-262-2006
	2	14	9	23	070-5165-3590
	3	14	9	23	070-4060-7009
2	4	14	10	24	070-5165-3591
	5	14	10	24	070-4060-7024
	6	14	9	23	070-7176-1325
	7(특수)	3	1	4	070-4060-7021
	8(특수)	2	2	4	070-5175-1155
소	계	84	56	140	
학년	반	남	여	계	
	1	14	10	24	063-262-0300
	2	15	10	25	070-4060-7038
3	3	14	11	25	070-5165-3592
3	4	14	10	24	070-4060-7032
	5	13	12	25	070-7176-1326
	6	13	11	24	070-5165-3593
<u></u>		83	64	147	
총	계	255	171	426	

3 2025학년도 일과 운영



4 2025학년도 학사운영 계획



가. **1**학기

요	일		OI.				·		_		_	출석	일수
월	주		월		<u>화</u>		수 		목		금	일수	누계
	1	3	대체휴일	4	입학식	5		6		7		4	4
	2	10		11		12		13		14		5	9
3	3	17		18		19	교육과정설명회	20		21		5	14
	4	24		25		26		27		28		5	19
	5	31		1	영어듣기능력평가 (1학년)	2		3	영어듣기능력평가 (2학년)	4	영어듣기능력평가 (3학년)	5	24
3/	6	7		8		9		10		11		5	29
4	7	14		15		16		17		18		5	34
	8	21		22		23	소변검사	24		25		5	39
	9	28	1차고사	29	1차고사	30	1차고사	1	현장체험학습(1,3) 테마식체험학습(2)	2	테마식체험학습(2)	5	44
	10	5	어린이날	6	대체휴일	7		8	체육행사	9	체육행사	3	47
4/ 5	11	12		13		14		15		16		5	52
	12	19		20		21		22		23		5	57
	13	26		27		28		29		30		5	62
	14	2		3		4	목요일수업	5	개교기념일	6	현충일	3	67
	15	9		10		11		12		13		5	70
6	16	16		17		18		19	2학년 119 안전체험	20		5	75
	17	23	교내자율장학주간 (6.23.~6.27.)	24		25		26		27		5	80
	18	30		1	2차고사	2	2차고사	3	2차고사	4	2차고사	5	85
6/	19	7		8		9		10		11		5	90
7	20	14		15		16		17		18	종업식 및 방학식	5	95
	21												
행시	나일		0/0/0		0/0/0		0/0/0		2/2/2		1/2/1	3/4	1/3
고서	나일		1/1/1		2/2/2		2/2/2		1/1/1		1/1/1	7/7	7/7
수입	걸일		17/17/17		17/17/17		18/18/18		16/16/16		17/17/17	85/8	4/85
	41		18		19		20		19		19	9	5

나. 2학기

요	일		월		화		수		목		금	출석	일수
월	주		2		अ		T		7		0	일수	누계
	1	18	개학	19		20		21		22		5	5
	2	26		27		28		29		30		5	10
	3	1		2	영어듣기능력평가 (1학년)	3	영어듣기능력평가 (2학년)	4	영어듣기능력평가 (3학년)	5		5	15
9	4	8		9		10		11		12		5	20
3	5	15		16		17		18		19		5	25
	6	22		23		24		25		26		5	30
	7	29		30	1차고사	1	1차고사	2	1차고사	3	개천절	4	34
	8	6	추석	7	추석연휴	8	추석대체휴일	9	한글날	10	현장체험학습(1,3) 테마식체험학습(2)	1	35
10	9	13		14	특목고 내신산출완료일	15		16		17		5	40
	10	20		21		22		23		24		5	45
	11	27	교내자율장학주간 (10.27.~10.31.)	28		29		30		31		5	50
	12	3		4		5	학생회장 선거	6	일반고 마이스터고 내신산출완료일	7		5	55
	13	10		11	금요일수업	12		13	2025 대학능력시험일	14		5	60
11	14	17	목요일수업	18		19		20		21		5	65
	15	24		25		26	2차고사	27	2차고사	28	2차고사	5	70
	16	1		2		3		4		5		5	75
10	17	8		9		10		11		12		5	80
12	18	15	후기고 내신산출완료일	16		17		18		19		5	85
	19	22		23	금요일수업	24		25	성탄절	26	봉실축제	4	89
	20	29		30		31		1	신정	2		4	93
1	21	5	목요일수업	6		7	졸업식/종업식					3	96
행시	나일		0/0/0		0/0/0		0/0/0		0/0/0		2/2/2	2/:	2/2
고시	나일		0/0/0		1/1/1		2/2/2		2/2/2		1/1/1	6/0	6/6
수잍	법일		20/20/20		20/20/20		17/17/17		15/15/15		16/16/16	88/8	8/88
7	1		20		20		20		17		19	9	6
총	 계		38		39		40		36		38	19	91

2025학년도 교육과정 편성표



가. 2025학년도 전체학년 교육과정편성표

1학년 6학급, 2학년 6학급, 3학년 6학급, 특수학급 2학급

완주중학교

						1호	년						2호	박년	3호	l년
	구	분		1힉		2호	기	자유	학기		구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			시수	학교 자율	시수	학교 자율	1 학기	2 학기		. –					
	÷. ¬	정보									÷. ¬	정보				
	학교 자율	교과									학교 자율	교과				
	'-	교양										교양				
		국어		68		51			주17		국	어	68	68	68	68
	사:	회	사회	51		34			주17		사회/	사회			34	34
	역. 도		역사								도덕	역사	51	51	34	34
	ᅩ	7	도덕	34		34						도덕	17	17	34	34
		수학		68		51			주17		수	학	68	68	51	51
	과	한	과학	34		17			주17		과학/	과학	68	68	68	68
	기술	가정 기가 51 34 보 정보 34 34 체육 51 51				주17		기술·가 정/	기술·가 정	51	51	51	51			
교	0.	_	정보	34		34				교 과	정보	정보				
과		체육		51		51				(군)	체	육	51	51	34	34
(군)	예·	수	음악	34		34				`	예술	음악	17	17	17	17
ll	બા	2	미술	17		17					세호	미술	34	34	17	17
		영어		51		51					영	어	51	51	68	68
		교과	한문									한문				
		선택	외국어									생활외 국어	34	34		
			환경								선택	환경				
	선택	- 01	보건									보건				
		교양 선택	진직	17		17						진로와 직업			17	17
			기타									시수 ·계	510	510	493	493
		소계		510		425					자율	활동	8	8	8	8
	자율	자치홀	탈동	10		10					동아리	미활동	17	17	17	17
		동아리	 활동	17		7				+10171	봉사	활동	5	5	5	5
	동아리		스포츠	17		17				창의적 체험	진로	활동	4	4	4	4
창의적 체험	활동	학스	체육대 체							활동						
활동	 전	<u></u> 로활동	5	7					진17		체험활·	의적 동 시수 ·계	34	34	34	34
		소계		51		34					기존창 ~(체활용(58)	17	17	17	17
자유	진로	르탐색횰	탈동		ż	St.			17	학교 스포츠		 순증				
학기 활동	주저	∥선택횧	탈동		국사	누과기			85	클럽 활동	교과	·감축			17	17
총	수업	시간 =	÷	561		459						포츠클 수 합계	17	17	34	34
	학교자·	율시간		(교고	바군)	(과=	목명)	(시	수)	총 =	수업 시간	<u>가</u> 수	561	561	561	561

한문/중국어 * 3학년 학교스포츠 체육수업 대체 학기당 17시간 연간 34시간

나. 2025학년도 입학생 3개년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표

완주중학교

							1	학년				2호	†년			3호	l년			
		구분		기준	1호	기	2호	기	자유	우학기	1호	기	2호	기	1호	가기	2호	학기	편성	증감
		. –		시수	시수	학교 자율	시수	학교 자율	1 학기	2 학기	시수	학교 자율	시수	학교 자율	시수	학교 자율	시수	학교 자율	시수	시수
		정보																		
	학교 자율	교과		33															34	34
	시뀰	교양	세계시민 교육															34		
		국어		442	68		51			주17	68		68		68		68		391	-51
	사	회	사회		51		34			주17					34		34		153	
	역 도	사	역사	510							51		51		34		34		170	-17
		<u> </u>	도덕		34		34				17		17		34		34		170	
		수학		374	68		51			주17	68		68		51		51		357	-17
	과	학	과학		34		17			주17	68		68		68		68		323	
_	기술 정	가정	기가	680	51		34			주17	51		51		34		34		255	-34
교 과		<u> </u>	정보		34		34												68	
(군)		체육		272	51		51				51		51		34		34		272	
	예	숙	음악	272	34		34				17		17		17		17		136	
	미술		미술		17		17				34		34		17		17		136	
		영어		340	51		51				51		51		68		68		340	
		교과	한문								34		34						68	
		선택	외국어																	
	선택		환경	170																-34
	_ '	교양	보건	170	17		17											34	68	31
		선택	진직												34			31		
			기타																	
		소계		3,060	510		425				510		510	0	493		459	34	2,941	-119
	자	율자치	활동		10		10				10		10		10		10		60	
사이	E 01 71	동이	리활동		17		7				17		17		17		17		92	
적	동아리 활동	학스	스포츠	306	17		17				17		17		17		17		136	17
체험 활동			체육대체												17		17		130	
		진로활	동		7					진17	7		7		7		7		35	
		소계		306	51		34				51		51		68		68		323	17
자유	진	로탐색	활동			7	탕			17										
학기 활동	주	제선택	활동	102		국사=	수과기			85									102	102
	총 수	업 시긴	<u></u>	3,366	561		459				561		561		561		527	34	3,264	
		이수 3	과목 수		 		자유	우학기		В	8	8		8	,	8				
	학교자율시간 교육감승인과목					편성교과			과목	명		시	수	총	니간 -	학	·년	학	기	
			내용			선택((교양)			세계시단	민교육		3	4	3	34		3	2	2
								ł	<u>선</u> 택교:	과 한문/	중국어									

다. 2024학년도 입학생 3개년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표

완주중학교

													ᆫ		<u> 꼭 ╨</u>
	L		기준	총골				1학		1		2호	ţ년 '	3ē	ţ년 -
	구분		기준 시수	편성 시수	증감 시수	1학기 (기본)	1학기 (자유)	전환 항목	2학기 (기본)	2학기 (자유)	전환 항목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국	어	442	408	-34	68	68		68	51	주17	68	68	68	68
		사회		170		51	51		51	34	진17			34	34
	사회/ 도덕	역사	510	170								51	51	34	34
		도덕		170		34	34		34	34		17	17	34	34
	수	학	374	374		68	68		68	51	주17	68	68	51	51
	과하 /	과학		374		34	34		34	34		68	68	68	68
	과학/ 기술·가정/ 정보	기술·가정	680	272		34	34		34	17	주17	51	51	51	51
	8.1	정보		34		34	34		34	17	주17				
교 과 (군)	체	육	272	272		51	51		51	34	예17	51	51	34	34
(쿤)	예술	음악	272	136		34	34		34	17	예17	17	17	17	17
	에걸	미술	212	136		17	17		17	17		34	34	17	17
	영	어	340	340		51	51		51	34	진17	51	51	68	68
		한문		68								34	34		
		생활외국어			-										
	선택	환경	170	0	-34										
		보건		34		17	17		17	17					
		진로와직업		34										17	17
	소	계	3,060	2,992	-68	493	493		493	357	136	510	510	493	493
	자율	활동		48		8	8		8	8		8	8	8	8
<u>창</u> 의	동아리	활동	306	102	-68	17	17		17	0	동17	17	17	17	17
창의 적 체험 활동	봉사	활동	300	30		5	5		5	5		5	5	5	5
월 농 	진로	활동		58		21	21		21	21		4	4	4	4
	소	계	306	238	-68	51	51		51	34	17	34	34	34	34
하고	창체활·	용(~68)		68	68							17	17	17	17
스포 스포 大	창체	순증	136												
학교 스포 츠 클립 활동	교과	감축		68	68	17	17		17	0	예17			17	17
L	소	계	136	136	136	17	17		17	0	17	17	17	34	34
	총 수업 시	간 수	3,366	3,366		561	561	136	561	391	170	561	561	561	561
	이수 과목	수				8	8		8	8		8	8	8	8
	진로탐	색활동		51						34	사,영				
자 유	주제선	택활동	224	68						68	국,도 수,기				
자유학기활동	예술체	육활동	221~	68						51	체,음				
활동	동아리	의활동		34						17	동				
	소	계	221~	221						170					

* 3학년 학교스포츠클럽활동 1,2학기 각각 17시간은 체육교과 수업으로 대체함.

- ★ 자유학년 편성 참고사항
- 1. 1, 2학기의 총 시수의 합이 221시간 이상(즉, 17시간 기준으로 한 13단위 이상을 편성)
- 2. 학기별 설정 영역에 대한 제한 없이 2개 학기에 걸쳐 4개 영역 설정
- 3. 교과(군)별 시간 배당(3년간 총 기준 수업 시수)의 20%범위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의 85시간(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수 포함) 범위내에서 '자유학기 활동' 편성
- 4. 예술·체육 교과(군)를 활용하는 경우 예술·체육 활동으로만 편성
- 5.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활용하는 경우 예술체육 활동의 체육활동이나 동아리 활동(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관련 프로그램)으로 편성

라. 2023학년도 입학생 3개년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표

완주중학교

				총골	<u></u>	I	1학년					2학년 3학년			
			기즈	0 8	⊒ 			13	^[]			2=	12	3=	12
	구분		기준 시수	편성 시수	증감 시수	1학기 (기본)	1학기 (자유)	전환 항목	2학기 (기본)	2학기 (자유)		2학기			
	국어		442	408	-34	68	68		68	51	주17	68	68	68	68
		사회		170		51	51		51	34	진17			34	34
	사회/ 도덕	역사	510	170								51	51	34	34
	'	도덕		170		34	34		34	17	주17	17	17	34	34
	수학		374	374		68	68		68	51	주17	68	68	51	51
	교하	과학		374		34	34		34	34		68	68	68	68
	과학/ 기술·가정/ 정보	기술·가정	680	272]	34	34		34	17	주17	51	51	51	51
	싱모 	정보		34		34	34		34	34					
교 과 (군)	체	육	272	272		51	51		51	34	예17	51	51	34	34
(군)	예술	음악	272	136		34	34		34	17	예17	17	17	17	17
	에골	미술	212	136		17	17		17	17		34	34	17	17
	영	어	340	340		51	51		51	34	진17	51	51	68	68
		한문 생활외국어		68								34	34		
	선택	환경	170	0	-34										
		보건		34		17	17		17	17					
		진로와직업		34										17	17
	소	계	3,060	2,992	-68	493	493		493	357	136	510	510	493	493
	자율활동			48		8	8		8	8		8	8	8	8
창의	동아리활동		306	102	-68	17	17		17	0	동17	17	17	17	17
창의 적 체험 활동	봉사		300	30	-00	5	5		5	5		5	5	5	5
활동	진로			58		21	21		21	21		4	4	4	4
	소	계	306	238	-68	51	51		51	34	17	34	34	34	34
÷. ¬	창체활·			68	68							17	17	17	17
약교 스포	창체	순증	136	0	0										
학교 스포 클립활동	교과	감축		68	68	17	17		17	0	예17			17	17
활동	소	계	136	136	136	17	17		17	0	17	17	17	34	34
	총 수업 시	간 수	3,366	3,366		561	561	136	561	391	170	561	561	561	561
	이수 과목	· 수				8	8		8	8		8	8	8	8
	진로탐	색활동		51						34	사,영				
자 요	주제선	택활동	221~	68						68	국,도 수,기				
자유학기활동	예술체	육활동	221~	68						51	체,음				
통	동아리	의활동		34						17	동				
	소	계	221~	221						170					

- * 3학년 학교스포츠클럽활동 1,2학기 각각 17시간은 체육교과 수업으로 대체함.
 - ★ 자유학년 편성 참고사항
 - 1. 1, 2학기의 총 시수의 합이 221시간 이상(즉, 17시간 기준으로 한 13단위 이상을 편성)
 - 2. 학기별 설정 영역에 대한 제한 없이 2개 학기에 걸쳐 4개 영역 설정
 - 3. 교과(군)별 시간 배당(3년간 총 기준 수업 시수)의 20%범위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의 85시간(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수 포함) 범위내에서 '자유학기 활동' 편성
 - 4. 예술·체육 교과(군)를 활용하는 경우 예술·체육 활동으로만 편성
 - 5.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활용하는 경우 예술체육 활동의 체육활동이나 동아리 활동(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관련 프로그램)으로 편성

6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교외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

개정 2024.07.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중학교 학교 규칙」 제4장 11조에 규정된 체험학습(개인교환학습, 단체교 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석인정 일수)

- 1. 본교 개인 교환학습 인정 기간은 1개월(4주)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 2.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15일 이내 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 3.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과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1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 4.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 다.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제3조(운영절차)

- 1. 학생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 2. 교환학습(개인, 단체)은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협의사 항 학부모에 통보→ 교환학습 실시→위탁학교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교환학 습 보고서 제출의 절차로 운영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체험학습 운영계획 [서식 4] ~[서식9] 이용.
- 3.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 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불 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
 - ①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나 보고서 제출이 불가피 한 경우
 - ② 기타 학교장이 인정한 사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체험학습 운영계획 [서식1] ~ [서식3] 이용.
- 4. 학교는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신 청서 및 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
- 5. 서식 등 세부 절차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체험학습 운영계획을 따른다.

제4조(교외체험학습 형태)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관찰, 조사, 수집, 문화체험 답사·견학 활동, 체험활동 등이 있으며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제5조(체험학습 불허 사항)

-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② 정기고사 실시 기간 및 이의신청 기간 (단, 이의 신청기간에는 성적 이의신청 포기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시 학교장의 승인 을 얻어 허가함.)
 -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 ③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제6조(미인정 결석 처리)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 ②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 ③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제7조(결과 처리)

- ① 신청서 및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
- ②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선박티켓 등) 사본을 제출한다.

부칙 위 기준안은 2024.8.20.일부터 시행한다.

7 2025학년도 자유학기제 운영 계획



1. 자유학기제 개념

학생의 자아를 탐색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르기 위해 중학교 1학년 한 학기 동안 학생 참여형 수업과 이와 연계한 과정 중심 평가*를 강화하며,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을 편 성 · 운영하는 제도. 우리 학교는 2학기에 운영함.

* 단원별 형성평가, 협력기반 수행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등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중점을 둔 학생 참여형 수업과 연계한 평가

2. 추진 목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특색있는 자유학기 교육과정

- **○** 교사학습공동체 기반 교실 수업 개선 [프로젝트 학습, 교과 융합 수업, 주제 통합 수업]
- 학생의 진로탐색을 지원하는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 수업 운영
- 지역사회 교육자원을 적극 활용한 교과 연계 체험 활동
- **② 학생 참여형 수업 및 과정 중심 평가 내실화**

3. 완주중 자유학기제(2학기) 시간표 운영

2학기(6단위/102시간)										
요일교시	ᅋ	화	수 목 금							
1			기본 교과(27시간	<u>'</u> L'), 자유학기 활동 -	수업(6시간)					
2			○ 교육과정 : 성취 기준 기반 수업							
3			─ ○ 수업방법 - 문제해결, 의사소통, 토론, 실습, 체험 등							
4			- 수업 및 활	동 내용에 따라 탄	력적 블록타임제					
5			주제선택활동							
6	고 III 니티 & C			굿 III 니 EII SL C						
7	주제선택활동	진로탐색활동		· 주제선택활동						



1. 2026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일정(안)

※ 3월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가능

구분		?	던기고		후기고				
학교유형 전형일정	특수목적고(4개교) (신업수요 맞춤형고) [4개교]	Ç	특수목적 특성화고(전문2 일반고(전문27 [37	5개교,	대인4개교)	특수목적고(1개교) 자율형사립고(1개교) 【2개교】	비평준화 평준화 일반고, 일반고, 자율형 자율형 공립고 공립고 [53개교] [39개교]		
내신산출기준일	'25. 9. 30.(화)		′25. 10		• •	'25. 12. 11.(목)			
내신산출완료일	'25. 10. 14.(화)		′25. 1	1. 6.(·			12. 15.(월)		
원서교부·접수	'25.10.20.(월)-10.23.(목) 17:00까지		'25.11.7.(금)- 11.11.(화) 17:00까지		'25.11.19 <u>.(</u> 수)- 11.21.(금) 17:00까지	외국어고: '25 일반고: '25.'	.12.4.(목)-12.9.(화) 5.12.15.(월)-12.17.(수) 12.17.(수)-12.19.(금)		
전형기간 (전형일)	'25.10.28.(화)-11.3.(월)	특별 전문 (전문 계열)	′25.11.14.(금)	일반 전형	'25.11.24.(월)- 11.26.(수)	자기주도 상산고 학습전형 전북오	고: '25.12.22.(월)~12.23.(화) 니고: '12.29.(월)		
합격자 발표	'25.11.4.(화) 10:00	계열) 	'25.11.17.(월) 10:00		'25.11.28.(금) 10:00	학교별 일정	(비)'25.12.31.(수)10:00 (평)'26.1.9.(금)10:00 상산고'25.12.30.(화) 전북외고 12.31.(수)		
학교배정발표							평준화일반고 배정 '26.1.16.(금) 14:00		
등록기간	2026. 1.	19.(월)-1. 21.(수) 1	7:00	까지 [전·후기고	. 공통 정시모집	등록기간]		
원서접수		•	2026. 2. 2.	(월)-2	2. 3.(화) 17:00				
추가 전형일					목)-2. 6.(금)				
모집 합격자발표					<u>(화) 10:00</u>				
등록기간					2. 13.(금) 17:0(2026 F 22.(ユ				
수시 원서접수	스시 츠키 1	ב (ג ב			2026. 5. 22.(금 경기 바피 드) 록은 기간 내 수	الم		
추가 전형 및 등록기간	(다민	- H -, 입호	학시기는 교육	o, 병 -과정	역사 필요, 6 년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특기사항	* 전북과학고의 전형	은 8	월 말부터 /	* 평	준화 일반고·자	공고는 추가모집	l·수시추가모집 없음		
전형군별 학교명단	특수목적고(4) (산업수요 맞춤형고) -군산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 -한국경마축산고 -김제동생명마이스터고	특성화되는 전문가 전주생양 변고, 군인 보고 있는 대안가 고 전 반고 조 등 만 보고 전 등 만 보고	학고,전북체육고 (29) (19(25) 명과학고,전주공 산여상고,이리공고 고,칠보고,글로벌 덕암정보고,수소 한방고,한국기술 고,한국치즈과학 골모(4) 세인고,푸른꿈고 정문계열(2) 통문화고,함열여고 에체계열(4) 통문화고,남원국목	2,원광. 학산고 아버너지 무사곤고,강호 전북인 ,지평선	12	특수목적고(1) 전북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1) 상산고	○ 평준화 (일반고·자공고)(39) 전주(23):전복사대부고 양현고 전라고,전주고,전주술내고,전주이고 전우 전라고,전주요나고,전주고 연역이고,전주에임일고,동암고,완산고,우석고,전주성심으고,전주영어고,전주영생고,전주선흥고,전주중앙여고,전주양생고,전주성등과,전주상임고,군산제일고,군산에일고,군산양일고,군산생일고,군산에일고,군산양의고,군산양일고,군산생일고,군산에의고,당생일교,진복생일보고·자몽고)(53) 군산(1):한들고 익산(5):생일교,익산교,여산고,현열고,전복생(5):생일교,익산교,여산고,현열고,전복제(7):김제, 당신이고,인상고,본원이고,반원고,동계교,본원이고,당원기는생기는생기는생기는생기는생기는생기는생기는생기는생기는생기는생기는생기는생기		
전형136개교(133개교)	4개교		37개교(중복	1개교	! 포함)	2개교	92개교(중복 1개교 포함)		

2. 2026학년도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 지침(안) 주요 내용

가. 내신성적 반영 항목

구분	항목		배점	반영비율	비고
	일반교과	1-2학년	90점	30%	
교과	巨型地杆	3학년	90점	30%	
11111	체육·예술교과	전 학년	60점	20%	
	소계		240점	80%	
	출결상횡	-	30점	10%	학년별 10점
	봉사활동성	-황	15점	5%	전 학년
비교과	행동특성 및 종 창의적 체험활		15점	5%	학년별 5점 (기본점수3점)
	소계		60점	20%	
	총계	300점	100%		

- ※ 자유학기제 등으로 성취도 환산이 가능한 성적이 없는 학기의 교과성적은 반영하지 않음
- ※ 전기고 내신성적산출: 3학년 2학기 1차 지필고사(수행평가 제외)
- ※ 후기고 내신성적산출: 3학년 2학기 1, 2차 지필고사+수행평가

교과 성적 산출 공식

구분	학 년	교과 성적 산출 공식	배점
	1-2	$\left(rac{$ 이수과목 성취도 환산점수 $ m to}{} + rac{$ 이수과목 원점수 $ m to}{} imes 0.01 ight) imes 15$	90
일반 교과	3	$\left(rac{$ 이수과목 성취도 환산점수 $ m to}{} + rac{}{}$ 이수과목 원점수 $ m to}{} imes 0.01 ight) imes 15$	90
	소		100
	계		180
체육·	71		
예술	전	이수과목 성취도 환산점수 합 이수과목 수	60
교과	학년	이수	
합 2	ᅨ		240

- ※ 이수과목이란 성취평가제에 의한 성취도 환산이 가능한 과목을 말한다.
- * 교과의 성취도 환산점수: A=5점, B=4점. C=3점, C=2점, E=1점
- ※ 내신성적 산출은 NEIS 프로그램에서 자동 계산된다.

나. 출결상황

- 1) 미인정으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 산출 미인정으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 산출은 이를 합산하여 3회를 결석 1일로 계산한다(3회 미만은 0일로 계산).
- 2) 점수 산출 미인정 결석일수에 따른 출결점수는 아래 표와 같이 각 학년별로 산출하며 총 30점 만점 을 적용한다.

□ 학년별 출결상황 내신점수 산출표 □

미인정 결석일수	출결상황 점수
0일	10점
1 - 3일	9점
4 - 7일	8점
8 - 11일	7점
12 - 15일	6점
16 - 19일	5점
20일 이상	4점

다. 봉사활동상황

봉사활동상황의 점수는 3개 학년의 봉사활동 시간을 합산하여 아래와 같이 내신점수를 부여한다.

□ 봉사활동상황 30시간 기준 내신점수 산출표 □

시간	30시간 이상	29-28	27-26	25-24	23-22	21-20	19-18	17-16	15-14	13-12	11-10	9-8	7-6	5시간 이하
점수	15점	14점	13점	12점	11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 기타 사항은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1)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점수의 총점은 15점(학년 당 5점)으로 한다.
- 2) 학년 당 점수 5점 중 3점은 기본점수이며, 2점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각 부여 대상별 점수는 0.5점으로 한다.
- 3) 반드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으로 내신점수를 산출한다.
- 4) 가산점 부여 항목은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수 있다.
- 5) 가산점 부여 대상자는 내신성적 산출 시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 가산점 부여 항목 예시안 (점수는 0.5점 기준) □

순	항 목	유형	기 준	점 수				
1	학교장 표창	행동 덕목	모범상, 효행상, 선행상, 봉사상, 예절상 등의 인성과 관련한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표창별 0.5점				
고 자율	유공자	학급 정·부반장, 학생회 임원으로 한 학기 이상 유공 이 지속된 자	항목별					
2	활동	우수자 교과와 관련 없는 각종 자율활동으로 인한 학교장 표 창을 받은 자						
3	동아리활동 유공 ⁷ 3 (창의적		동아리활동반 정·부반장(기장)으로 한 학기 이상 유공 이 지속된 자	0.5점 및				
	체험활동)	우수자	각종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항목별 우수자				
4	진로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우수자	각종 진로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	0.5점				

[※] 위 표를 기준으로 가산점 부여 항목과 세부사항은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함.

※ 참고자료

■ 2025학년도 졸업생 진로진학 상황 ■

\ 학교유형				전기고						후기	고				
7 2 11 8		특수목	목적고						탁 고	자율형 사립고					
졸업년도	산 요 수 명 고 이 스터고)	과학 고	전북 체고	전주 예고	영 재 고	특성화고	일반 고 (전문 계,예 체계)	대 안 계 열	전북 외고	상산 고	평준 화 일반 고	비 평 한 한 일 고	타기되	기 타	계
2025 (6학급)	6	0	0	0	0	22	1	7	1	0	23	61	5	0	126

9 2025학년도 봉사활동 운영 계왹



★ 학생 봉사활동 권장 시수

구분	초(5-6학년)	중	고	비고				
	2년 통합 8시간	3년 통합 30시간	3년 통합 27시간					
권장	(연간기준 4시간)	(연간기준 10시간)	(연간기준 9시간)	전년				
내용	※ 특정 학년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중 지속적 실시 권장							
	※ 교육과정 내 2/3이상 편	년성 권장						

1. 봉사 시간	. 봉사 시간									
평일(7교시 수업기준)	평일(6교시 수업기준)	평일(4교시 수업기준)	휴업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							
1시간	2시간	4시간	8시간							
1일 인정 가능한 8시간을 초과해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할 수 없음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하 (준비/교육)활동〉평가) : 3		▶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								
학교교육계획에 의거하여 동, 수학여행 등) 후 실시한	학교행사(현장학습, 수련활 · 봉사활동	▶ 인정 가능하나 중복 인정은 불가 예) 자율활동(체육대회)을 6시간 한 후 봉사활동을 3시간 실시하였다면 1 일 8시간만 인정 가능하므로 2시간만 봉사활동으로 인정								
교외체험학습일에 봉사활 8시간을 한 경우	발동 ▶ 봉사활동 당일 학	교 수업이 7시간이면 봉사활동	동은 1시간만 인정함							

2. 징계 관련 학생 선도교육 프로그램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 인정 불가
- 보호처분 3호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에 의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에 의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 미인정 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 인정 불가
- ※ 본교의「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는 봉사활동 담당자와「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3.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소양교육

- ▶ 학년 초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봉사활동 **소양교육(2시간 이내)**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가능 ㆍ 학교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소양교육 외에,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활동은 인정 불가 단, 봉사활동 시작 전에 꼭 교육이 필요한 경우는 1시간 인정 가능하다.
- 4. 봉사활동 1시간의 기준
- ▶ 중학교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 내(45분)으로 정한다. 그 외 교내. 교외 봉사활동 60분 1시간 산정

5. 봉사동아리 부서에서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 ▶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 ▶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 다만 봉사활동계획에 의해 동아리활동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였다면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

6.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공공부문: 행정기관, 공공기관,	フレニ
공공 시설	715
민간기관: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가능
단체	

▶ 민간기관·사설기관에서의 봉사

· 민간기관·사설기관의 봉사활동도 가능하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기관(단체)여야 하고, 활동영역 및 내용이 「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내용, 영역,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 인정 불가

시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가능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등

7. 봉사활동 인정 불가능 기관

영리 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불가능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불가능
공 익 목적에 위배 되는 기관이나 단체	불가능
※ 영리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세부기준 참조	<u></u>

8. 영리기관(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인정 기준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기관 가능	
노인요양병원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은 인정 가능,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은 인정 불가	보시하도 기느 기교이다. 하
	노인복지법 상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시설은 인정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은 인정 불가	봉사활동 가능 기관이라 할 지라도 활동영역, 내용, 안전 등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어 그나면 인정 불가능
병원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이 운영하는 병·의원 등 각급 으로 만 중시회사업실 또는 자원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시업장 가능 (병원 내 사회복지사, 사회공헌팀, 사회사업실(팀) 등이 관리하는 병원)	· · · = = · •

9. 기타 봉사활동

· 만 16세 이상, 체중이 남자 50kg, 여자 45kg 이상인 경우 가능 1회당 4시간 인정, 연 <u>3회까지</u> · **인정**

- 평일에 했을 경우, 수업 시간과 상관없이(7교시, 8교시를 했더라도) 4시간 인정

- 헌혈자 본인만 인정, 헌혈증서 양도 금지

- 봉사활동계획서는 제출하지 않고, 학부모동의서를 제출해야 실적 인정

(불가피한 경우 사후 확인서 제출, 학생의 건강을 고려하며 무리한 헌혈봉사가 되지 않도록 함)

- 학생의 건강을 고려하며 무리한 헌혈봉사가 되지 않도록 한다.

- 실적연계사이트에서 전송된 헌혈의 경우에도 반드시 학부모동의서(소감록) 필요

- 학부모가 동의서(사후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학부모를 대리할 수 있는 보호자나 학생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대신 제출할 수 있다. 단위학교의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학생의 실정을 고려하여 승인 후 실적 인정 가능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

헌혈

· 봉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전문교육 및 회의시간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 · 봉사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는 교육 등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간은 1시간을 인정할 수 있으 나, 봉사활동 관련 단순 영상물 시청 등은 인정 불가능함.

· 봉사활동과 연결되지 않는 소양교육, 회의 참석, 평가단 참여, 기자단 활동 등은 인정 불가능함.

물품 및 현금기부	_ <u>-</u>	인정 불가(헌옷 모으기,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폐휴대폰 수거, 모발 기부 등) 라자 뜨기, 비누 만들기 등을 한 후 학생이 가져가는 경우 인정 불가 다만 '사전교육-캠페인-물품 및 현금 모금활동-기부-평가'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경우만 인정하되 ★봉사활동이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프로그램계획안, 활동 결과물 등)를 제출해야 한다.
활동비를 내고 봉사활		- 활동비를 요구하는 기관에서의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 불가능하다 다만 봉사자 개인에게 소비되는 기본 교통비와 식비 수준의 활동비 일부는 허용 가능하며, 학교 학생 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신중히 판단 후 인정 여부를 결정.
학교에서의 일상	활동	 교실 및 특별실 청소, 환경미화 등 일상적 학교활동은 인정 불가능하다. 다만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학교 봉사활동은 인정 가능하나 가급적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교육과정 내 봉사활동은 특정 학생이 여러 종류의 봉사활동을 하거나, 한 종류의 봉사활동을 독점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 시 기준 제시 권장한다.(예: 두 가지 도우미를 같이 하는 경우, 1년 동안 같은 도우미를 계속 하는 경우등 지양)
신입생 입학 전 봉 졸업생의 졸업 후(봉사학	에 실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해당 법조문에 따라 입학 전, 졸업 후라도 학년도 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인정할 수 있다.
문화공연 준비		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 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 연습시간은 인정 주체의 일상적인 공연준비나 연습은 인정 불가
행사 참여	- 단순 - 정부·기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 참여는 인정 불가 지자체 기념식 등의 공공행사에 단순 동원 형태의 참여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활동비 등 발 받는 활동은 인정 불가
번 역 ※	※ 공식적 요	에 <u>의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경우</u> , 200자 원고지 5매당 또는 A4 1매를 1시간 기준으로 인정 2청 : 1. <mark>공문요청 2. 봉사실적연계사이트 일감 등록 3. 공개된 홈페이지 일감 등록</mark> 음 등 번역과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는 기준을 정하여 인정(번역료 등 수당 받으면 인정
선플 달기 - 김	건전한 사0	은동본부 http://www.sunfull.or.kr 버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으로 '선플 달기'작성 시 최대 12시간까지 봉사활동으로 인정 상, 중 50자 이상, 고 60자 이상으로 20건당 일주일 최대 1시간 인정
부녀회, 경로당의	-부녀회,	관리사무소에서 단지내 주민(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 실시 경우: 미인정 노인정의 봉사활동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 기관(단체)이 비영리 기관(단체)이며, 학 발동 취지에 맞게 활동한 내용 증빙할 수 있으면 인정함.
봉사활동 실비	보상	- 어떠한 형태로든 금품을 사례로 받은 경우는 인정 불가 단. 봉사활동 중 식사를 제공 받은 경우는 인정 가능(식비로 받은 경우는 인정 불 가)
봉사활동 시간에서 인정 여부	<u>L</u>	-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입력하는 것이 원칙(학교생활기록부에는 분 단위는 절사하여 입력함) 단. 동일기관의 같은 내용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경우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입력

10.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한 기타 사례

- 푸드마켓에 음식물 기부
- 문예작품(그림, 글짓기) 공모전 응모
- 인구조사 참여, 모발 기부
- 영재교육 과정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 결석생의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 봉사활동확인서 발급을 통해 학생을 동원하는 각종 행사 참여 봉사활동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활동 참여
- 운동경기 또는 공연 관람
- 태극기 달고 인증샷 찍기
- 해외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 각종 토론 및 토의 참여
- 모바일 광고 열람 및 인터넷 신규가입자 추천

11. 봉사활동 확인서

- 봉사활동 실시 후 봉사자의 성명, 활동시간, 대상기관, 활동장소, 활동영역, 활동내용, 확인기관명, 화번호 및 활동 기관의 직인, 확인자의 성명 및 서명, 확인서 발급번호 등을 확인 받아 담임께 제출한다.
- · 봉사활동 확인서에는 **학생명, 학교명, 활동 시간, 활동 장소, 활동 내용 및 의견, 확인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활동기관의 직인, 확인서 발급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 발급번호가 미기재 되어 있거나 기록 내용이 부실할 경우는 담임교사가 발급기관에 확인 후 「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봉사활동추진위원장의 실인으로 조치할 수 있다. 그러나 **확인자의 서명과 활동기관의 직인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12. 개인봉사활동/연계사이트 이용(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

- 학생들이 나눔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한 경우에는 봉사활동 실적이 나이스로 전송된 내용을 지도교사가 확인 후 승인한다.(확인서 제출 안함)
-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봉사활동 확인자 및 대상 **기관 연락처**를 확인서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봉사활동 시간, 기관, 장소, 내용 등에 대하여 필요시 유선으로 연락하여 확인한다.
- 봉사활동 실시하기 전 반드시 인정 기관, 활동내용, 시간 등을 확인, 승인한 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에게 아내하다.
- 1365자워봉사포털, VMS, DOVOL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을지라도 「2025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위반될 경우 인정 불가

◎ 나이스 기재요령

-※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초등학교(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봉사활동 영역 자체가 제외됨에 따라 자율, 자치, 동아리, 진로 영역에서 봉사활동 가치를 담은 활동을 구성하여 자체 진행 후 해당 영역에 기재함

1) 완주중학교 봉사활동 1학년 연간 계획서(학교 단위 봉사활동 연간 계획서)

순	일시	봉사 시간	활동영역	활동내용	봉사단체 (학년, 학급)	주관 (담당자)
1	3월 4일	1	자율· 자치	교내외 환경 정비	전체학급	학급담임
2	4월 15일	1	진로	봉사활동 기본소양교육	전체학급	학급담임
3	4월 22일	1	자율・자치	인권 옹호활동 및 교내 환경정화	전체학급	학급담임
4	5월 27일	1	진로 활동	자존감 키우기, 상호 존종 캠페인	전체학급	학급담임
5	6월 10일	1	진로 활동	직업 체험 봉사활동	전체학급	학급담임
6	8월 19일	1	자율・자치	농촌 봉사, 텃밭 가꾸기 활동	전체학급	학급담임
7	9월 2일	1	자율・자치	환경 기본 교육 및 교내외 환경정화	전체학급	학급담임
8	10월 21일	1	자율・자치	생태 환경보호 활동	전체학급	학급담임
9	11월 18일	1	자율・자치	환경 봉사 활동	전체학급	학급담임
10	12월 2일	1	자율・자치	교내외 환경 정화	전체학급	학급담임
합		10				

[※]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실시 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2) 완주중학교 봉사활동 2,3학년 연간 계획서(학교 단위 봉사활동 연간 계획서)

순	일시	봉사 시간	활동영역	활동내용	봉사단체 (학년,학급)	주관 (담당자)
1	3월 4일	1	환경보호활동	교내외 환경정화	전체학급	학급담임
2	4월 15일	1	캠페인 활동	봉사활동 기본 소양교육	전체학급	학급담임
3	4월 22일	1	환경보호활동	교내외 환경정화	전체학급	학급담임
4	5월 27일	1	환경보호활동	교내외 환경정화	전체학급	학급담임
5	6월 10일	1	환경보호활동	교내외 환경정화	전체학급	학급담임
6	8월 19일	1	환경보호활동	교내외 환경정화	전체학급	학급담임
7	9월 2일	1	환경보호활동	교내외 환경정화	전체학급	학급담임
8	10월 21일	1	환경보호활동	교내외 환경정화	전체학급	학급담임
9	11월 18일	1	환경보호활동	교내외 환경정화	전체학급	학급담임
10	12월 2일	1	환경보호활동	교내외 환경정화	전체학급	학급담임
합		10				

[※]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실시 일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1. 결석

가. 결석일수의 산정

- 1) 학칙에 따라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 '장기결석'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7일 내외의 범위(최대 3일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에서 학교장이 정함.
 - ※ 본교는 **10일**로 정함.
-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 (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 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7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 학생 본인	20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사 망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 12) 학교장은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에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 생리인정 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함.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 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 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 등교시간대 거주지나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
-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 등 장기적 치료가 필료한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6)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 4)~6)의 경우 결석 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의사의 진단 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라. 미인정결석

-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5)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체포·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 6)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7)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마. 기타결석

-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3)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따라 결석한 경우
 - 가)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를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 나) 후보등록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다)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으로서 정당 활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4)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지각·조퇴·결과

- 가. 지각: 조회시간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나. 조퇴: 조회시간과 종례시간사이에 하교한 경우
- 다.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
 - 1) 수업 담당 교사 입장 후 정당한 사유 없이 5분 이상 불참한 경우 미인정 결과 처리한다.
- 라. 위의 2. 나.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마. 지각·조퇴·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미인정·기타로 처리한다.
- 바. 같은 날짜에 **지각·조퇴·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한다
 - 1) 사유를 미인정, 질병, 기타, 인정 순서로 우선 처리한다.
 - 2) 사유가 같은 경우 조퇴, 지각, 결과 순서로 처리한다.
- 사.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 아.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 자. 같은 날짜에 조회시간, 수업시간, 종례시간을 모두 참여하지 않았지만, 점심시간에 담임교사와 면

학생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 안내



1. 학교안전사고 보장제도라?



이럴 때, 신청하세요



🥍 학교안전사고란 무엇인가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 교직원 ·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신체적 · 심리적 피해를 주는 사고나 질병을 뜻합니다.

「학교안전법 제2조제6호」



》 교육활동이란?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이나 방침에 의한 학교내 외부활동이 해당됩니다.

- ▶ 특별·재량·과외·수련 및 체육대회 등 현장체험활동
- ▶ 수업과 등 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

「학교안전법 제2조제4호」

💥 보상 기능한 질병은?

- ▶ 학교급식이나 가스 중에 의한 중독
- ▶ 일사병(日射病)
- ▶ 이물질의 섭취·접촉에 의한 질병
- ▶ 외부 충격과 부상이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학교안전사고로 치료를 받았거나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사망한 경우 등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요양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질병 치료를 받았을 때 청구 ※ 의학적으로 필요할 경우 입원치료 중 간병비 청구 가능

장해급여

요양이 종료된 후에도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 청구 (단, 한시 장해는 불인정)

간병급여

치료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청구

유족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구

장례비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장례비 청구

위로금

교육활동 중 원인 미상의 이유로 사망하였을 때 상속인이 청구

0

이렇게 청구하세요





학부모(보호자 등) 또는 학교



사고발생 일로부터 치료의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안에 청구 가능 ※ 청구 횟수는 제한 없음



% 어떻게?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www.schoolsafe.or.kr)에 접속하여 청구서 작성 또는 청구서를 다운받아 수기 작성

05

준비해야 할 서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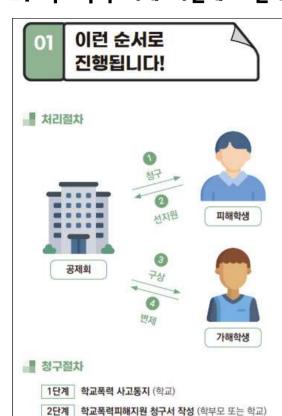
구비서류

- 공제급여청구서
- 진단서 (청구금액 50만원 초과 시)
- 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 ⑤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구금액 50만원 초과시) ex)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 정확한 심사를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간병료와 부대경비 청구 시 구비서류는 11p를 참고해 주세요.

요양급여

- 오편발송: 우)5506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내 학교안전공제회
- 온라인: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에 서류 스캔본 첨부

2. 학교폭력 피해 지워제도 안내



02 이렇게 청구하세요



₩ 누가?

학부모 또는 학교

% 언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후, 가 · 피해자간 합의되지 않은 경우

% 어떻게?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www.schoolsafe.or.kr)에 접속 하여 청구서 작성 또는 청구서를 다운받아 수기 작성

※ 자세한 청구방법이 궁금하다면 시스템 사용방법 안내(226)를 참고해주세요.

지원범위

보상범위	세부내역	인정기간
심리상담 및 조언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상담 또는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년 (보상심사 위원회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의료기관, 보건소, 약국 등에서 치료에 소요된 비용	심의 후 1년 연장 가능)
일시보호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 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30일

03 준비해야 할 서류는?

3단계 구비서류 제출 (학부모 또는 학교)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i	공통서류	학교폭력피해치료비 등 청구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심리상담 및 조언	• 치료기관의 상담확인서 및 영수증 등
급여별 제출서류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
M2.111	일시보호	 심의위원회의 요청서 사본 또는 학교장의 확인서 일시보호기관의 청구서 및 영수증 등

※ 정확한 심사를 위해 구비서류 이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방법

● 우편발송 : 우)55065 전북측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내 학교안전공제회

② 온라인: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에 서류 스캔본 첨부

04 심사 후 처리과정을 알려드려요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 ▶ 공제회는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를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 다만,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로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울 때에는 14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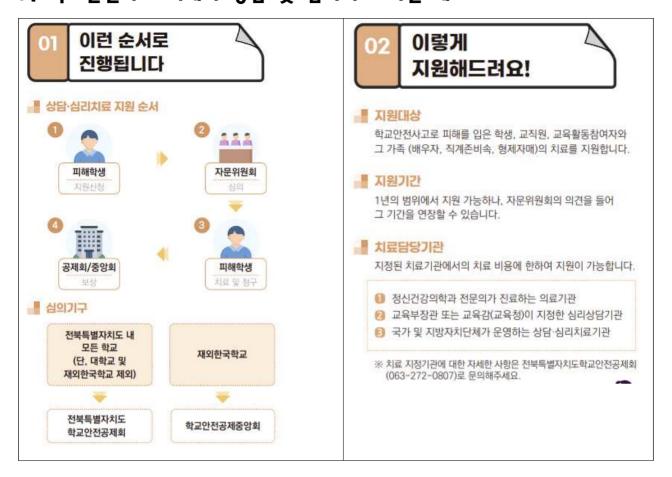
심사결과가 불만족스러울땐?

-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와 마찬가지로 보상심사 및 재심사 기회가 있습니다.
- ※ 보상심사 및 재심사제도가 궁금하다면 재심사제도 안내(10p)를 참고해 주세요.

· 기해학생에 대한 구상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 공제회는 피해학생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하기 전 가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선지원 내용과 구상권 행사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 ▶ 아울러, 구상의 범위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을 구상합니다.

3.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제도



학교안전 공제제도의 자세한 안내는 학교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12 2025악년도 악교 외계 예산



	구 분	예산액 (단위: 천원)	비고
	지방교육행정기관 이전수입	879,961	
	학부모부담 수입	51,631	
세 입	행정 활동 수입	8,400	
	전년도이월금	10,000	
	세 입 계	949,992	
	인적자원 운용	6,650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459,557	
	기본적 교육활동	107,197	
세	선택적 교육활동	15,651	
출	교육활동 지원	102,793	
	학교 일반운영	253,144	
	학교 재무활동	5,000	
	세 출 계	949,992	

13 악부모 연수 까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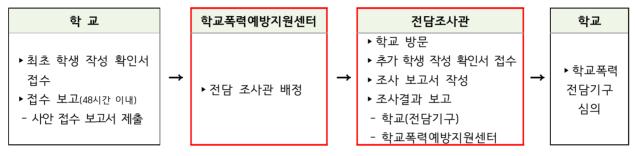


가. 학교 폭력 예방 교육

- 1. 학교폭력의 개념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
- 2. 학교폭력 사안 처리 관련 내용

가. 사안 처리 절차

- 2024학년도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신설로 인한 학교폭력 사안접수 처리절차 변경



- 모든 사안 접수 시 2호(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긴급조치 의무 시행
- 나.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관련 내용 변경
- 2023.3.1.~2024.2.29. 기간에 신고된 학교폭력으로 심의위원회 조치를 받은 경우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학교폭력 신고일	서면 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학교에서 의 봉사	사회 <u>봉</u> 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 석 정지	학 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
2023.3.1.~ 2024.2.29.	전담기구 심의 없이 졸업과 동시 삭제			(콜	업일로부터 2년 (업 직전 전담기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구 심의	의 를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전담기구심의 불기)	삭제 불가

- 2024.3.1. 이후에 신고된 학교폭력으로 심의위원회 조치를 받은 경우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학교폭력 신고일	서면 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학교에서 의 봉사	사회 <u>봉</u> 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 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
2024.3.1.	전담기구 심의 없이			_	업일로부터 년 후 삭제		로부터 보 삭제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삭제
이후		졸업과 동시 식	낚 제	(졸업	업 직전 전담기구 <mark>졸업과 동</mark> 시 식			(전담기구 심의 불기)	불가

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 대회 참가 제한 조치

제1호(서면사과), 제2호(접촉, 협박, 보복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3개월 정지
제4호(사회봉사), 제5호(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6개월 정지
제8호(전학)	12개월 정지
참고 제9호(퇴학)	5년 혹은 10년
[검포 제/호(되역)	(선수등록 금지)

나. 성폭력 예방 교육, 양성평등 교육



1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강간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몸을 만지거나 말로 하는 것, 보여주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성폭력은 성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을 포괄합니다. 이는 신체적인 접촉을 얼마나 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며, 가벼운 추행이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모욕감을 느꼈다면 성폭력으로 봅니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사이라도 신체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만지는 행동, 상대방의 몸에 대해 놀리는 등 수치심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영상, 사진, 그림 등을 보여주는 것 모두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한 학부모 지침

- 가. 자녀들이 무엇이나 물어볼 수 있도록 나무라지 마시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 나. 성(性)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자연스럽게, 즉시 그리고 정직하게 가르칩니다.
- 다. 아이들이 평소에 무심히 하는 행동이나 말도 유심히 봅니다.
- 라. 남자 또는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도록 해 줍니다.
- 마. 어른이 되면서 겪는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2. 성폭력·성희롱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 가. 성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누구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 나. 성폭력을 하는 사람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 친절한 사람이 많습니다.
- 다. 외딴 골목을 혼자 걸어가는 것을 피합니다.
- 라. 집안에 있을 때는 항상 문을 잠그고 낯선 사람은 절대 집안에 들이지 않습니다.
- 마. 호신술이나 호신 도구(호루라기 등)는 자신감을 갖는데 도움이 됩니다.
- 바. 의도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경우를 경계합니다.
- 사. 위급한 상황일 경우 소리를 지르는 등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집기나 가재도구로 창문을 깨뜨려 외부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3. 성폭력 발생시 도움을 받을수 있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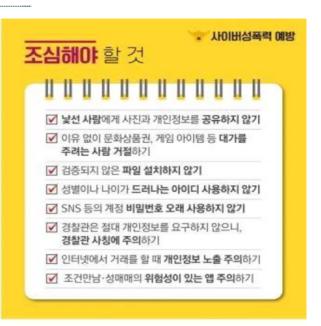
- 신고전화: 관할 경찰서 국번 없이 11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긴급전화 1388: 성 비위 피해 긴급 위기상담 및 신고
- 한국 성폭력 상담센터: http://www.sisters.or.kr (02-338-5801)
- 사이버수사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접속 후 사이버범죄신고
- 전북 해바라기센터(063-278-0117))
-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활용: 가정 및 학교 근처 성범죄자 인적사항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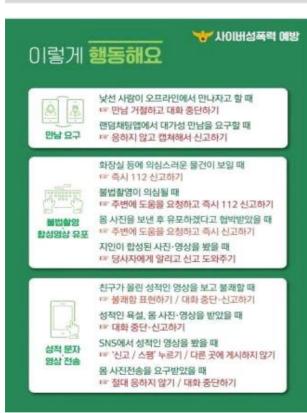
4. 성교육에 임하는 부모님들이 가져야 할 자세

- 가. 성교육을 위해 부모님들이 먼저 변화해야 합니다.
- 성에 대하여 엄격하며 금기시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로 인식합니다.
- 나. 자녀들의 성적 성숙을 인정하여 현실감각을 갖고,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다. 부모가 일상생활 속에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 라. 딸이나 아들 모두 이성(異姓)의 성 발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 마. 성교육은 과학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 윤리적인 면을 병행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 바. 질문에 답할때는 당황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불충분한 대답이라도 좋으나,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사. 자연스러운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 아. 준비하고 있다가 계기를 포착하여 성교육을 합니다.
- 자. 정확한 성지식을 알고 있어야 잘 지도하므로 부모 자신도 올바른 성에 대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 차. 부모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전문교사나 상담기관을 찾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디지털그루밍 대처방안

- 나이, 주소, 학교, 아이디,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 제공 요청
- 이유 없이 문화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 대가를 주겠다고 접근하는 사람
- 따로 메신저로 연결하자고 제안
-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따로 만나자고 제안
- 사진 및 동영상 제공 요청

거절하고 이런 제안이 있었음을 보호자에게 말하기



🗿 양성평등 교육

- 양성 중 어느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갖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여 똑같은 참여 기회를 주고, 똑같은 권리와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남녀의 신체적 차이와 남녀 각각의 타고난 성에 의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1. 자녀 성교육에 임하는 부모님들이 가져야 할 자세

- 성교육을 위해 부모님들이 먼저 변화해야 합니다.
- 성에 대하여 엄격하며 금기시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로 인식합니다.
- 자녀들의 성적 성숙을 인정하여 현실감각을 갖고,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부모가 일상생활 속에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 딸이나 아들 모두 이성(異姓)의 성 발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 성교육은 과학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 윤리적인 면을 병행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 질문에 답할 때는 당황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불충분한 대답이라도 좋으나,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자연스러운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 준비하고 있다가 계기를 포착하여 성교육을 합니다.
- 정확한 성지식을 알고 있어야 잘 지도하므로 부모 자신도 올바른 성에 대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 부모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전문교사나 상담기관을 찾습니다.

2. 부모님과 함께하는 양성평등 교육-『성차별·성 차이·성 고정관념 구별하기』

가. 성차별이란?

- 생각이나 행동에서 여자와 남자를 공평하지 않게 대우, 성을 차별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 【예】① 남자는 씩씩해야 하고 여자는 다소곳해야 한다.
 - ② 우리 학급에서 회장은 남자, 부회장은 여자가 해야 한다.
 - ③ 남자는 돈을 벌기 때문에 집안일을 안 해도 된다.
 - ④ 남자는 슬퍼도 울면 안 된다.

나. 성 고정관념

남자와 여자의 능력, 특성,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해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예】남자는 중요하고, 씩씩하고, 용기 있고, 활기찬 일을 하고 여자는 얌전하고, 정숙하고, 섬세한 일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고정관념.

일상에서 자녀에게 하는 대표적인	성차별 발언들 (양성평등진흥원제공)
아들에게	딸에게
너는 우리 집안의 대들보야	공주같이 예쁜 딸
공부를 잘못하면 어떻게 처자식 먹여 살릴래?	여자니까 옷차림이 단정해야지
사내자식이 뭐 그런 걸 가지고 울어?	여자니까 예쁘게 걷고, 예쁘게 말해라
사내자식이 통이 커야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 시집을 잘가지
사내다워야 하는 거야	설거지는 여동생한테 시켜라

3. 양성평등 실천을 촉진하는 생각들

- 집안 살림은 가족이 함께 분담합니다.
- 행복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노력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 여자나 남자 모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야 합니다.
- 남녀가 똑같이 일을 하는 경우 승진, 임금의 기회도 동등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 여성다운 또는 남성다운 말이나 행동은 없습니다.

다. 감염병 예방 교육

1.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

병 명	임상 증상	전파 차단을 위한 등교중지(격리) 기간
결핵	발열, 전신 피로감, 식은땀, 체중감소	약물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수두	피부발진, 수포, 발열, 피로감	모든 수포에 가피가 형성될 때까지
유행성 각결막염	충혈, 안통, 이물감, 눈곱	격리 없이 개인위생수칙 준수
유행성 이하선염	이하선 부종, 발열, 두통, 근육통	증상 발생 후 5일까지
수족구병	발열 손 발바다가 구강 내 수포 및 궤양	수포 발생 후 6일간 또는 가피가 형성될 때까지
인플루엔자	발열, 두통, 인후통, 기침, 객담	유행 차단을 위한 등교중지는 의미없지만 환자상태에 따라 실시
백일해	상기도 감염 증상, 발작적 기침, 구토	항생제 투여 후 5일까지
마이코 플라즈마 발열, 인후통, 기침 등 폐렴		진단서에 명시된 기간

※ 학생이 법정 감염병에 걸려 등교중지를 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 가. 감염병이 의심되면 등교하기 전에 담임선생님께 전화 연락 후 병원에 갑니다.
- 나. 병원 진료 후 감염병 진단을 받으면 담임선생님께 전화 후 격리 치료를 합니다.
- 다. 완치되어 등교할 때 병원에서 의사확인서를 받아 담임선생님께 제출 합니다.

2. 감염병 전파(확산) 방지

- 가. 학생이 열이 나거나 기침을 많이 하는 상태로 등교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친구들에게 감염병을 전파 시킬 수 있습니다.
- 나. 감염병이 발생하면 충분한 휴식을 취해서 면역력을 높여야 하는데 무리하게 등교하면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다. 해마다 감염병이 유행하고 새로운 종류의 감염병이 발생하여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감염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으므로 단체생활에서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여 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차단합시다.

3. 감염병 발생시 대처

- 가. 관련법규 : 학교보건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 22조
- 나. 대상
 - 감염병예방법 제2조에 규정된 감염병환자 (다만 의사의 진단에 의해 타인에게 전염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외한다)
 - 그 외에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전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자
- 다. 감염병이 의심이 되는 경우 (★학부모 대처법)
 - 1) 즉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것
 - 2) 감염성 질병으로 진단을 받으면 학생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바로 전화로 담임교사에게 알림
 - 3) 학생이 완쾌 즉, 전염성이 없어지면 의사의 진단을 받고 진료확인서를 가지고 학교에 등교하여야 출석이 인정됨
 - 4) 가정에서는 학생이 의사가 권고하는 전염 기간 동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학원등에 나가지 않 도록 지도 관리
 - 5) 평소 감염병에 잘 걸리지 않도록 예방접종을 제때에 실시,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도록 돕고, 손씻기 생활화 등 개인위생에 신경쓰도록 함.

라.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교육

1. 자살의 요인

그 개인적 요인 : 자살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을 맺는 정신질환 : 기분장애(특히 우울증)

○ 가족 요인 : 부모의 정신병리 / 자살행동의 가족력 / 가족 내 불화 / 부모 상실/ 부모-자녀관계의

문제 / 부모의 학대

O 학교 요인: 학교폭력, 학업 성취도 및 진로석성

※ 학업성취도 및 진로적성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은 가정이나 학교의 학업성취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에 노출되며 이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유해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O 사회적 요인 : 미디어의 영향

2. 자살의 징후

언어적 단서	정서•행동적 단서
 직접 말하거나 문자메시지, 일기장, 낙서의 암시 내가 사려져 줄게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더 이상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야 이젠 정말 끝이야 아무것도 내 상황을 바꿀 수 없어 엄마, 아빠 "미안해" "안녕" 	 갑작스런 행동 변화, 활동 수준의 증가/감소 물건을 정돈해서 주변사람에게 나누어 줌 소중한 물건이나 상장 등을 버리기 먹지 못하거나 혹은 과식 수면형태 변화 단정치 못한 외모 감정과 관련된 신체적 불편함 호소 죽음에 대한 관심을 보이거나 농담으로라도 자살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3. 자살의 예방

○ 자살의 가능성이 높거나 혹은 자살 사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

<자살 사고를 가진 학생의 특징>

- 일상적인 활동을 멀리하는 것
- 외모에 대해 평소와 달리 신경을 쓰지 않는 것
- 뚜렷한 성격의 변화
- 지속적 권태감 및 집중력 저하
- 신체증상 자주 호소하는 것
- 자살 생각이나 자살 시도는 정신과적 질환으로 간주하고 약물치료 적극 권장.

4. 비자살성 자해

생명에 위협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자해하는 행위로 자해행동과 자살시도 구별이 필요

- 비자살성 자해와 자살시도 간의 차이점

특성		자해행동	자살시도
의도/행동의 목적		- 심리적 고통으로부터의 일시적 도피 - 자기 자신/상황의 변화 추구	 영구적인 의식 단절/ 삶을 끝내는 것 참을 수 없는 심리적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남
방법의 치당	평성/심각성	- 낮음	- 높음
행동	빈도	- 높음 (때로 100회 이상) - 반복적, 만성적	- 낮음(일반적으로 1~3회)
시도된	탄방법	- 다양한 방법	- 단일한 방법
인지적 상태		- 고통스러우나 희망은 있음 - 문제해결이 어려움	- 희망이 없음, 무기력함 - 문제 해결이 불가능
결과/영향	개인	- 안도감, 진정 - 일시적 고통의 감소	- 좌절, 실망감 - 고통의 증가
	대인 관계	- 타인의 비난, 거절	- 타인의 돌봄, 관심

(Muehlenkamp & Kerr, 2009 재인용: 감수진, 2016)

5. 대응 방법

1. <u>경청</u> - 주의 깊게 듣는다.	아이가 하는 말을 기꺼이 들어주고 아이를 도와 진실 된 상황을 이해 시키되, 잘못된 확신은 피하게 한다. 도덕을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2. <u>격려</u> - 당신의 아이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다.	관심을 표현할 때는 말투가 적절해야 하며 자세하고 깊이 있게 아이가 현재 느끼고 있는 것을 느껴보려는 자세로 「나는 네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외로움이 있는지를 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너와함께 너의 문제를 마주하기를 희망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임한다.
3. 심각한 자해의 생각과 느낌이 있을 때 민감성의 높이를 유 지하여야 한다.	직접적으로 아이에게 자살에 대한 생각을 물어야 한다. 자살에 대한 생각을 처리해 주지 않으면 아이는 관심을 갖지 않는 다고 생각한다. 담담하게 자살의 의도를 표현하더라도 신중히 처 리한다.
4. 행동을 취한다.	자살위기에 처해있다고 느낄 때는 다른 가족에게도 알리고 학교 선생님께도 연락한다. 혼자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5. 자살하기 전에 보이는 의도 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살에 대해 사전에 준비를 한 아이는 정말로 한번은 시도를 할 수 있다. 만약 아이가 정말로 사전에 준비를 했었다면 반드시 가족, 선생님, 혹은 전문기관의 전문가에게 알리고 조심스럽게 경계해야 한다.
6. 충분한 관심을 주어 아이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시킨다.	현실에서 아이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 친구, 선생님, 동 반자, 종교인 등 모두가 아이에게 관심을 주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해 다시 자신을 확신할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6. 도움받을수 있는곳

○ 한국생명의전화 상담(1588-9191) : 365일 24시간 상시운영 http://www.lifeline.or.kr/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희망의 전화 http://www.129.go.kr/

○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마. 흡연·음주·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1. 청소년 흡연의 특성



흡연을 하는 학생이 흡연을 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키가 평균 2.54cm 작은 편입니다.



니코틴 중독, 폐기능 및 폐성장저하, 천식, 조기 복부 대동맥죽상경화증을 유발하며, 이후 다른 만성 질환을 유발합니다.



흡연은 조기 사망의 원인이며, 성인흡연자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초기 증상이 이미 초기 성인기 흡연자에게 나타납니다.



청소년에서의 흡연은 우울증과 상관성이 있어 자살에 영향을 미칩니다.



비흡연 또래에 비해 기침,가래,숨참. 천명 등의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며 운동기능 저하가 나타납니다.



청소년 흡연자에게서 우울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이 많이 발견되며 (음주, 본드 흡입 등의 행위를 이끌 수 있는 요인이 되어) 약물 과다복용 및 약물 의존도를 증가시킵니다.

2. 흡연 예방을 위한 부모님의 역할

- ▶ 부모님께서 흡연을 하는 경우, 강한 의지로 금연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 ▶ 자녀에게 혹은 가족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지 않습니다.
- ▶ 자녀가 함께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 간접흡연과 3차 흡연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 어른이 되면 담배를 피워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 ▶ 자녀가 담배를 피우는지 잘 관찰하시고 자녀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 3차 흡연을 아시나요?

흡연자가 비흡연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흡연을 하고 난 뒤 흡연자의 몸이나 섬유 (옷, 벽지, 카펫 등)에 배인 담배유해물질이 스며져 나와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

3. 술이나 담배를 권하는 친구에게 'NO!'라고 말하기

담배나 술, 약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여러 명의 친구와 함께 웃 으며 놀다가 갑자기 친구들이 담배나 술, 약물을 권할 수 있습니다.

- ◆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의 말들을 연습해 봅시다.
- ▶ 나는 마시고 싶지 않아.

- ▶속이 메슥거려 술은 안 마시는 것이 좋겠어.
- ▶ 폐가 약해 담배를 피우면 기침을 심하게 해 . ▶ 우리 농구하러 가지 않을래?
- ▶ 난 오렌지쥬스가 좋아. 쥬스 마실래.
- ▶ 노래나 책 등으로 화제를 바꾼다.
- ▶ 난 지금 가야 해. 약속이 있어 등.

호기심으로 시작한 청소년 시기의 흡연.음주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약물중독 및 청소년 비 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중한 자녀들이 흡연.음주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드 립니다.

4. 약물의 올바른 보관법

- ▶ 직사광선을 피하고 될 수 있는 한 습기가 적고 시원한 곳에 보관합니다.
- ▶ 약 봉투에 '냉장보관' 등이 쓰여 있는 경우 지시대로 따릅니다.
- ▶ 약품 본래의 용기에 보관하고, 사용하던 약을 다른 약병이나 약 봉투에 섞지 않습니다.
- ▶ 유효기간을 잘 보이도록 표시해 두고, 오래된 약은 버립니다.
- ▶ 약품 본래의 뚜껑을 잘 닫습니다.
- ▶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 보관합니다.

5. 금연구역 안내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바. 마약 예방 교육

🚺 자녀와 함께하는 마약예방교육 자료

유형	분량	학교급	제목	개발처
	90초	중, 고	마약류 예방 동영상 (5종)	경찰청
동영상	8분	초	위험한 선택, 마약떡볶이	
	10분	중, 고	아차하는 순간, 마약의 길	
이야기책	30쪽	초	위험한 선택, 마약떡볶이	
(동영상을 책형태로 제작)	30쪽	중, 고	아차하는 순간, 마약의 길	법무부
	50초	초중고	마약끊고 사람답게 살고싶어요	
쇼츠영상	50초	초중고	마약하기 전으로 되돌리고 싶어요	
	50초	초중고	마약중단, 정말 힘들어요	
	50초	초중고	무서운 마약중독과정	

2 학생 마약관련 신고 및 상담채널

구분	기관	신고 및 상담채널
신고, 수사	검찰	1301
	경찰	112
재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02-6929-3192
마약중독치료	인천참사랑 병원	032-572-9410
	국립부곡병원	055-536-6440
	국립법무병원	041-840-5400

- ※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학생들은 365일 24시간 무료 익명채팅 상담 '다들어줄개' 접속
 - ▶ ① '다들어줄개 앱 ②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③ 페이스북 메신저, ④ 문자(1661-5004)

사. 장애인권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

1 장애학생 인권 보호

■ 장애학생의 인권. 왜 중요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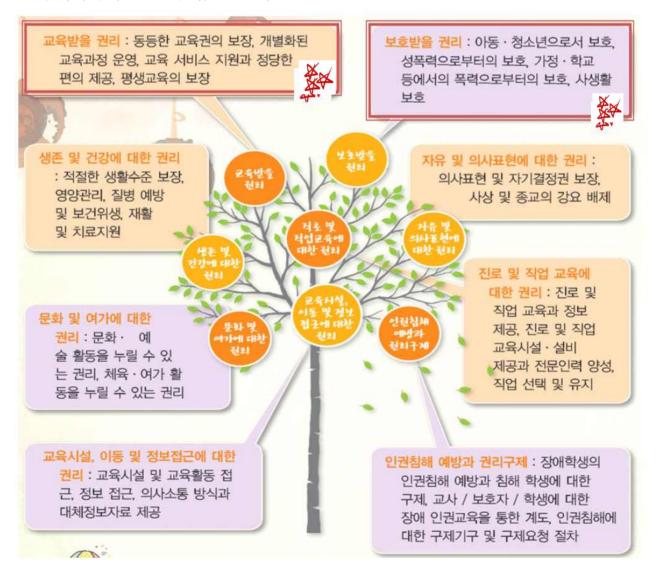
"내 삶의 문제는 장애 자체가 아니라,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는 건물이다."

호주의 지체장애 코미디언 스텔라 영의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장애를 극복하라고 말하지만 <u>극복돼야 하는 건 장애가 아니라 '편견과 차별'</u>입니다.

모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러한 어려움은 장애인 본인의 신체적 • 정신적 특성과 함께 사회적인 요소가 더해져서 생겨난 것입니다. **각각의 장애에 알맞은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가 있다면 더 이상 장애는 장애로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 장애학생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2 통합교육 요모조모

■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

■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 유형 ●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 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

[관련 법령]

- 교육기본법 제18조 (특수교육)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조(정의) 제21조 (통합교육)

□ 완주중학교 특수학급 현황

- 특수학급 2학급 운영(본관 서편 1층 2개 교실)
- 특수교육대상자중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의 개별 학습 지원을 위한 학습도움실 형태임

용어 정리 ① 비장애학생 : 장애학생이 아닌 학생

◎ 통합학급 : 특수교육대상자가 또래와 함께 교육을 받고 있는 일반학급

⊕ 특수학급 :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

* 비장애학생 및 장애학생이 통합학급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

비장애학생 장애학생 • 비장애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소통 기 • 인간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유연한 사고를 기 술과 사회적응 기술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됨 르는 데 도움이 됨 •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 •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책임감이 향상됨 생활 경험을 제공 받음 • 장애학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오해 등의 • 비장애학생과의 동등한 교류를 통해 자존감을 편견을 줄 일 수 있음 향상시킬 수 있음 • 장애로 인한 제한을 극복하고 성취하는 장애 • 분리교육에서 오는 장애의 낙인과 고립감에서 학생의 모습에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음 벗어날 수 있음. • 타인에 대한 인권감수성 향상에 도움이 됨 • 연령에 맞는 교육 경험의 폭이 넓어짐

■ 통합교육에 대한 Q&A

☑ 선생님, 장애학생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장애학생이 교육을 받는다면 학습적인 면이나, 감각적인 면에서는 더욱 발전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목표가 학생들의 지식이나 학력을 키워주는데 있지 않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켜 학생이 장차 훌륭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장애학생이 결국에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여러 일반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기에 학교교육에서부터 장애학생들을 통합시켜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 선생님, 장애학생이 일반학급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것보다 특수학급에서 한 가지라도 더 배우는 것이 낫지 않나요?

장애학생이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선생님과 친구들, 친구들끼리의 활동을 보면서 무엇인가 배우고 있습니다. 비장애학생의 행동과 태도는 장애학생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 니다. 학교는 작은 사회입니다. 장애학생이 속한 사회를 배우기 위해서는 그 사회 안에서 생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3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

장애인 차별 금지법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차별 진정 접수 국번없이 1331)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대 한 차별 금지(제 20, 21조)

공공기관 등이 배포하는 정보 에 접근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 로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장애인의 장애 특성에 맞추어 수화나 문자 등의 정보이용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수단을 제 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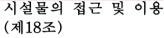
교육(제13조, 14조)

장애인의 입·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또한 모든 교육 활동에 있어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거 부할 수 없으며 교육책임자 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문화·예술·체육활동 (제24, 25조)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하는데 있어 시설의 이용이나 참여를 거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되며 참여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해 야하다.



장애인이나 보조견 및 장애 인보조기구 등이 시설물에 들어오거나 시설물을 사용 하는 것을 거부 금지해서는 안 되며 시설물의 접근 및 이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괴롭힘의 금지(제32조)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 울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 거나 비하하거나 학대 및 금 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





이동 및 교통수단(제19 조)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출입 및 사용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안전하고 편리 하에 이동할 수 있도록 정당 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지적 장애인(제37조)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 인의 장애 특성을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장애학생들도 교과 수업활동에 참여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없이 수업활동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이다.

>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 장애인에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벌률 제 49조(차별행위)
- ①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
- 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 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애학생에게 상처주는학교폭력, 이렇게 일어나요!

- 욕을 하고 무시하고, 장애학생이 혼자 있을 때면 이유 없이 괴롭혀요.
- ② 지체장애 학생의 걸음걸이나 말투를 흉내 내며 웃어요.
- ③ '애자' 라고 불러요.
- ④ 장애학생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부수거나 뺏어요,
- ⑤ 매일 욕을 하고 앉아있는 의자를 강제로 빼서 다치게 해요.
- ⑥ 성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통을 주어요.

★★장애학생 대상 학교 폭력 징계★★

비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가중 처벌합니다.

4 장애인과 함께 하는 에티켓

......장애인 먼저 실천 운동 본부 발췌

- 1. 장애인은 나와 다르지 않습니다.
- 2. 장애인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의사를 묻습니다.
- 3. 장애인 인권에 관심을 가집니다.
- 4. 장애인에 관련된 용어는 정확히 사용합니다.
- 5. 장애인에 대한 비하발언은 무의식중에 나오게 되니 항상 조심합니다.
- 6. 장애는 유형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시하면 안됩니다.
- 7. 장애 상태를 환자와 같이 비유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8. 어린이가 장애인을 보며 "왜 저래?" 라고 물었을 때 "엄마 말 안 들어서 그래"라는 식으로 부정적 인 인식을 심어주지 말고 장애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 9. 부모가 장애인이라고 그 자녀도 장애인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지 않습니다.
- 10. 장애인이 있는 가족은 장애인이 없는 가족과 다를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 11. 장애인을 무조건 칭찬하는 것도 편견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정당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12. 장애인도 오락, 문화,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어야 하며, 적절한 편의시설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13. 사람이 많은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제공은 필수적으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 14. 자원봉사를 할 때는 장애인관련 기본적인 에티켓을 숙지하고, 지시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학습 예방

□ 공교육정상화법이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이다.

이 법의 목적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용어의 의미

용어	주체	의미	
선행 교육	교육관련기관 (학교)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과 다르게 다음 학기/학년/학교급 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미리 가르치는 것)	
선행 학습	학생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 (학생이 사교육 등을 통해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서 배워야 할 학교수업 내용을 미리 공부하는 것)	
선행 출제	교육관련기관 (학교)	학교가 현재 편성한 교육과정과 다르게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각종 교내 시험에서 출제하는 것	

③ 선행학습의 문제점

- 가.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 나.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 다.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 라.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④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학교방침

- 가. 국가수준 및 시도교육과정 운영 지침 준수
-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선행출제 자체점검
 -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교과별, 학년별 교육과정과 평가내용 일치 여부
- 다. 학교교육과정위원회, 학업성적관리 위원회 등의 각종 기구들로 하여금 철저 감독
- 라. 방과후 학교 운영 점검: 선행교육과 관련된 방과후 활동 금지 철저

5 학부모의 책무

공교육정상화법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자. 학부모 청렴교육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2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 공직자 등 (유치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각종 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 전담기구 등)의 학부모위원을 포함한 민간위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을 제공한 일반 국민

3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부정청탁 금지)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 예: 각급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금품등 수수 금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 금지

(벌칙 등)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와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자에게 벌칙(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부과

4 Q&A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

Q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인 학부모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이 되는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이 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위원(구성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 지법(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등 수수 금지 등)이 준용됩니다.

전생님과의 면담시 커피나 간식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을까요?

▶ 안 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 •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드리는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 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Q 스슈의 날 학생들이 돈을 모아 담임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대표 등이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수가 금지된 선물을 받은 선생님만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받나요?

▶ 아닙니다. 누구든지 교직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하므로 제공자는 금품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5 불법찬조금이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청소년단체·방과후 교육활동 등 교육활동 후원 학부모 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주요 유형

- <u>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u>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 <u>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u>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하는 행위
- <u>학교장 등이</u>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학교발전기금과 불법찬조금 비교

구분	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조성명의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성되는 행위
조성방법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 · 조성 홍보시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행위(일정액 할당. 납부서 일괄 배부, 개별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 등)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행위
사용목적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 법령에 의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 - 교직원의 각종 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 비, 체육복 구입비 등 - 각종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 화환 등

15 2025악년도 교실배치도

Properties.

(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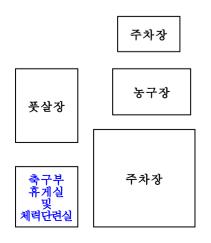
창고

창고

급 식 소







운동장